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지권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07
----------	------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3일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1명)  
찬 성 자 : 이은주, 이승미, 김인호, 정진술,  
강동길, 추승우, 김태호, 이현찬,  
김상훈 의원(9명)

## 1. 제안이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에 명기된 자전거 구매시에는 자치구 등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절차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실질적인 자전거 등록이 전무한 실정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한 자전거주차장(24개소)과 자전거거치대(5,209개)의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자전거거치대에 장기간 보관된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한 폐기 자체가 어려운게 현실임. 이에따라 시장과 구청장의 책무에 자전거 등록에 대하여 명기하고 자전거주차장과 거치대는 년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여 자전거주차장과 거치대 주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 2. 주요골자

- 가.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7항)
- 나. 자전거주차장 설치 관리자가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에서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변경함(안 제8조제2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상시”를 “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 ⑥ (생략) <u>&lt;신설&gt;</u></p>	<p>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시장은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생략)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u>상시</u>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p>	<p>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년1회 이상</u> <u>정기적으로</u> -----. ③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서울특별시장 등의 책무)를 개정함에 따라, 자전거 등록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발생
- ※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 점검(제8조2항)은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 것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460,250천원(연평균 92,05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지비용 (안 제3조제7항)	82,800	82,800	82,800	82,800	82,800	414,000
	등록포기 비용 (안 제3조제7항)	23,125	-	-	23,125	-	46,250
	소계(b)	105,925	82,800	82,800	105,925	82,800	460,250
□ 총 비용(b-a)		105,925	82,800	82,800	105,925	82,800	460,250

### 다. 전제

- 자전거 등록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기존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시스템 운영방식에 따라 비용이 상이하게 발생할 것이나, 자전거 등록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원구와 양천구에 따르면,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초기 시스템 구축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음
- 자전거 등록표기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티커를 이용하고 3년마다 교체하는 것으로 가정
- 강동구는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중이나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비용추계에 포함하고, 노원구와 양천구는 제외

라. 방법

- 자치구별 자전거대수는 노원구와 양천구의 인구당 자전거대수 평균 0.064대를 적용하여 계산
- 유지비용은 자치구별 월 30만원 적용(노원구 기준)하여 계산
- 등록표기 비용은 스티커 제작비용으로 40원 적용(양천구 기준)하여 계산

마. 세부추계내역

- 유지비용 ≙ 414,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연간 유지비용})_i$ 
    -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 유지비용
    - = 월 시스템 유지비용 × 대상 자치구수 × 개월수
    - = 300천원 × 23개 × 12개월
    - = 82,800천원
- 등록표기 비용 ≙ 46,250천원
  - 산출방식 : 1회당 등록표기 비용 × 2회(1년차, 4년차)
  - 1회당 등록표기 비용
    - = 스티커 제작비용 × 자전거대수(\*)
    - = 40원 × 581,131대
    - = 23,125천원
    - \* 자전거대수
      - = 노원구, 양천구 제외 인구수 × 노원구, 양천구 인구당 평균 자전거대수(\*\*)
      - = 9,033,302명 × 0.064대
      - = 581,131대
    - \*\* 노원구, 양천구 인구당 평균 자전거대수('18년 기준)

구분	인구수(명)	자전거대수(대)	1인당 자전거대수(대)
노원구	548,160	36,878	0.067
양천구	468,145	28,806	0.062
평균	508,152	32,842	0.064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분    석    관      이수아

☎ 02-2180-7944

e-mail : sua8873@seoul.go.kr